

APEC ENGINEER 상호인정 제도 **Mutual Recognition of APEC Engineer**

백이호 , Ee-Ho Baik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연구위원, Senior Researcher, Korea Construction Engineers
Association

SYNOPSIS : This study introduces the framework of the mutual recognition project of APEC Engineer and also tries to find out what we, Korean engineers have to do with this project.

The mutual recognition framework consists of 2 main frameworks ; the substantial equivalence framework and the mutual exemption framework.

The participating Economies have discussed and agreed on the framework of the substantial equivalency and have been producing APEC Engineers from the 1st, Nov 2000 based on this agreement.

However, more discussions will be required from now on in order to finalize the mutual exemption agreement, even though there have been a lot of discussions including the workshop for the regulatory authority for the last 5 years.

Here we have to study and find out what we have to do with this project and prepare for the bilateral agreements and the Coordinating Committee meeting to be held in Hongkong in Oct this year.

Key words : APEC Engineer, Professional Engineer, Recognition, Assessment, Coordinating Committee, Monitoring Committee, Register, Substantial equivalency, Mutual exemption.

1. 시작하는 말

전문기술자로서 성공하는데는 당연히 자기가 관계하고 있는 전문기술분야에 대한 탁월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더욱 다양해진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나의 연구결과, 나의 전문경력, 나의 전문가로서의 능력 등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제도를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WTO 체제하에서 세계화는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제 단순한 상품의 무역을 넘어서, GATS 에 의거 일반서비스에 관한 무역협정의 기본틀이 마련되어있고, 그 중에서 특히 전문기술자의 상호인정제도는 전문기술자의 국제활동을 통제

하는 하나의 제도로서 정착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주 쪽에서는 NAFTA라는 협정에 의해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전문기술자들이 자유롭게 국경을 초월하여 업무활동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FEANI를 통해 모든 EU국가에 속한 전문기술자의 활동을 자유롭게 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APEC에서는 APEC ENGINEER라는 자격을 내세워 다른 지역보다 더 적극적으로 상호인정과 국경을 초월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추세 속에서 우리 전문기술자들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APEC 엔지니어 상호인정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이 제도가 우리 전문기술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 되도록 연구하고 활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APEC ENGINEER 상호인정제도 개요

2.1 정의 및 용어설명

가. APEC ENGINEER(AE)

자국에서 독립업무가 가능한 전문기술자로 심사 받은 자로서 대학졸업 후 최소 7년의 경험을 갖고, 최소 2년간 중요한 기술업무에서의 책임자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만족할 수준의 계속교육(CPD)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나. APEC Engineer Coordinating Committee("CC")(조정위원회)

각 심사등록위원회(MC)로부터 파견된 한 명씩의 투표권자로 구성된 국제기구로서, AE의 등록을 개발 유지하며 AE의 활용을 촉진한다.

다. Assessment/Evaluation(심사)

일반적으로 이 두 용어는 동의어로 쓰이며 특별한 구별은 없고, 기준, 벤치마크 등에 대한 성취의 보고 또는 비교를 위한 특별한 절차를 뜻할 수도 있다.

라. Certification/Registration/License(자격증, 등록증, 면허증)

일반적으로 관할권의 범위 내에서 특수요건을 충족시키는 자를 등록부에 기재하는 절차이다.

마. Graduate Engineer(대학졸업기술자)

인정된 전문공학기관 또는 당국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심사된 공학과정을 만족스럽게 이수한 자

바. Monitoring Committee(MC)(심사등록위원회)

AE의 등록을 개발, 유지하기 위하여 참여 APEC 회원국 내에 설립된 독립공인기구.

사. Professional Engineer(PE)(기술사)

국가전문공학기관 또는 당국에 의하여 인정되어, 독립적인 전문기술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춘 기술자임을 확인하기 위한 일반어구로서, APEC회원국들은 각각 특별한 명칭과 기준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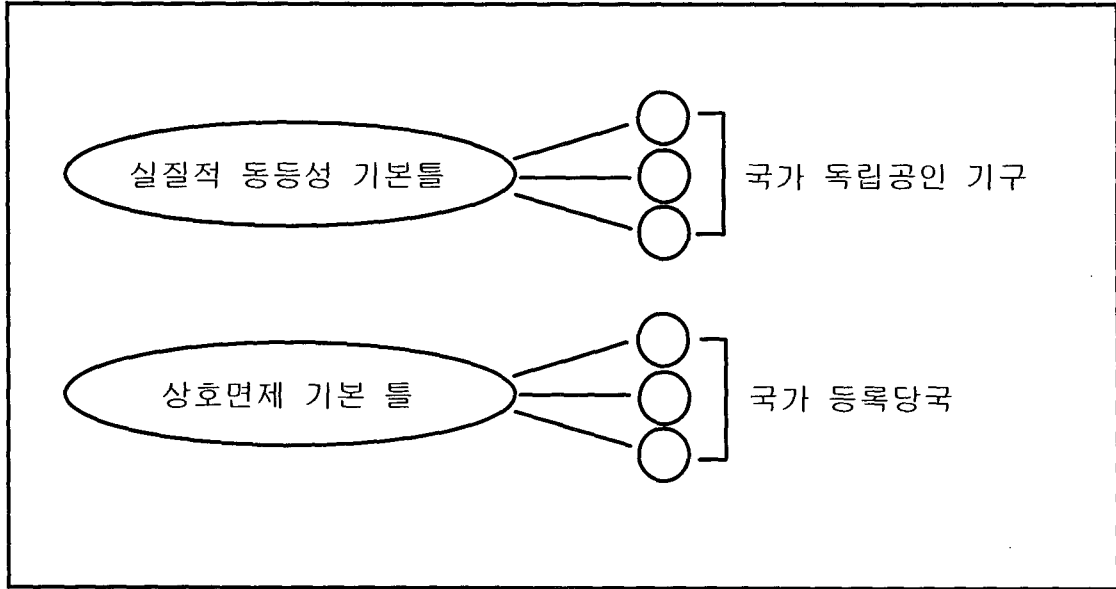
아. Recognition(see also Accreditation)(승인, 인정)

1. 요건준수증명(demonstration of compliance with requirements)에 대한 당국의 수락. 실질적 동등성을 결정할 때 과정 또는 경력의 심사에 적용될 수 있다.
2. 당국에 의한 대졸기술자들의 품질보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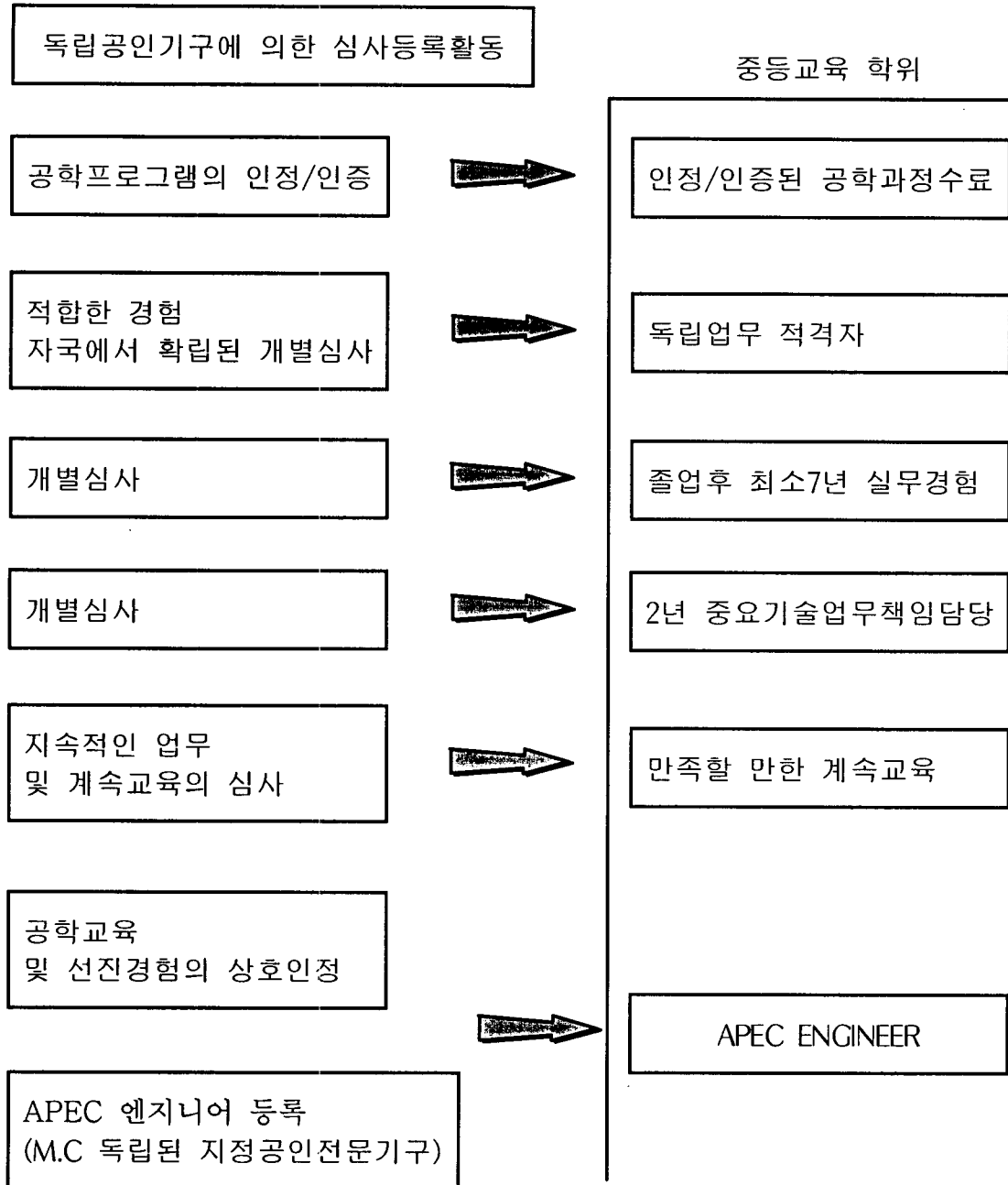
2.2 제도 개요

가. A.E. 개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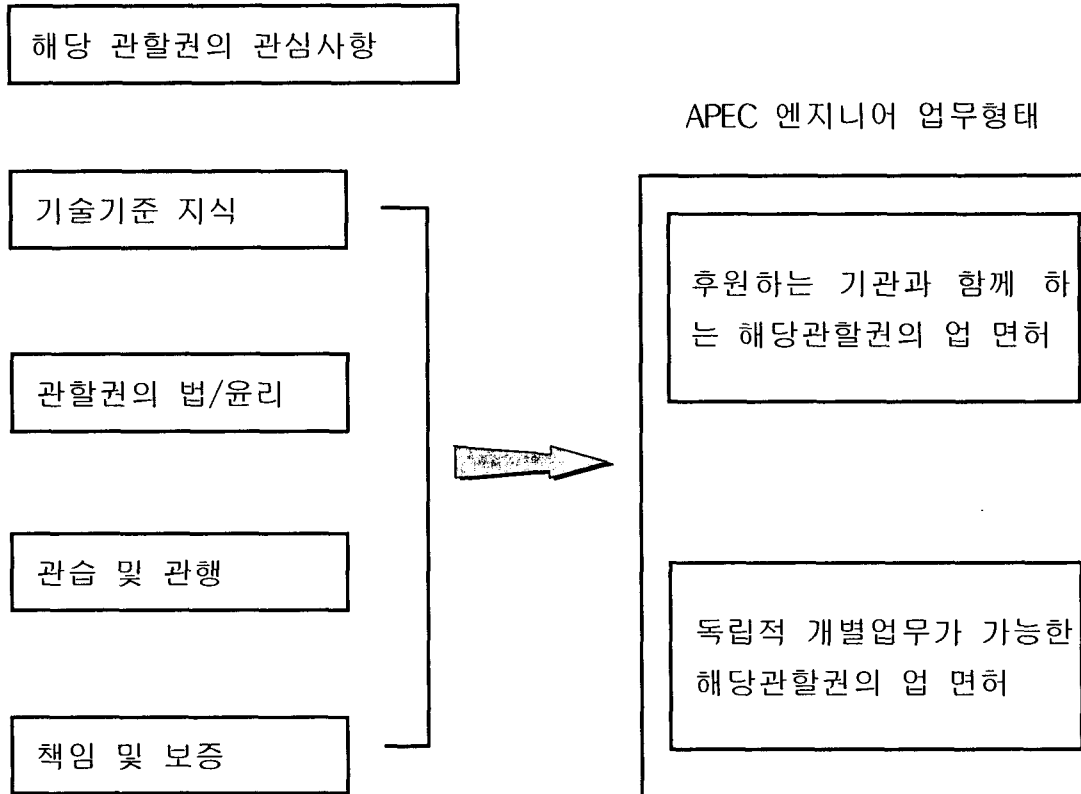
가.1. 전문기술자들의 상호인정을 위한 기본 틀



가.2. AE 기본 틀



가.3. 상호면제 기본 틀



나. A.E. 상호승인사업 참가국

- 호주
- 캐나다
- 중국
- 홍콩
- 인도네시아
- 일본
- 한국
- 말레이시아
- 뉴질랜드
- 파푸아 뉴기니
- 필리핀
- 싱가포르
- 태국
- 미국
- 베트남

다. 조정위원회(CC)

- AE 명칭을 부여하는 최종 공인권의 행사(CC는 각 국 MC에서 1인씩의 투표대리인으로 구성. CC는 경우에 따라 상기의 공인권을 각 참가국 공인 MC에 위임).
- 권위 있고 믿을만한 지역사무소의 유지 발전추진.
- AE가 어떤 회원국 면허등록전문기술자와도 실질적으로 동등한 일반 및 전문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각 회원국이 받아들여도록 추진
- 참가회원국들 사이에서 AE 업무의 편의를 위한 상호 수용 가능한 표준 및 기준을 발전, 감시, 유지 및 권장
- 기존장벽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정부나 면허당국이 그 장벽을 줄이거나 효과적 비차별적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협조하는 전략을 개발 촉진
- 관련정부와 면허당국이 AE에 대한 보다 간소한 업무면허 발급절차를 채택 시행하도록 권고
- 아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방법으로 상호감시 및 정보교환의 추진
 - ▶ 심사절차, 기준, 방식, 매뉴얼, 출판 그리고 인정된 업무종사자 명단 등에 대한 정기적 정보교환 및 정보공유
 - ▶ 다른 참가국의 절차운영을 입증하기 위한 초청
 - ▶ 중요절차 수행기관 및 관리기관의 공개회의에 참관초청
 - ▶ 심사등록사무소의 업무성과를 감시할 수 있는 기술자들의 체험보고
- 회원국간의 의사소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불참회원국 관련기관에게 CC에서 봉사할 비 투표권 회원임명을 위한 공개초청장의 송부

라. 심사등록위원회(Monitoring Committee)

라.1. 심사등록위원회의 역할

- 일차적인 역할은 해당국의 AE심사등록사무소를 유지 발전시키는 일.

- 심사등록사무소 운영권취득을 위한, AE 심사기준/ 절차설명서 제출.
- AE 등록자의 신분에 관한 신속 정확한 정보를 다른 공인MC와 교환.
- AE 관련문제의 유일한 창구역할.
- 다른 MC에 등록된 AE의 실질적 동등성을 수용 장려.
- 해당국의 면허등록기관으로 하여금, AE가 해당국의 기존 면허등록기술자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일반/전문 기술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보장하는 모든 합리적인 노력경주
- AE들이 AE기본틀에 명시된 요구조건의 준수 및, 심사설명서의 기본적 절차/기준을 통하여 그 준수사실을 증명했다는 것의 확인
- AE등록신청자들은 적절한 수준의 최근 CPD(계속교육)에 참여한 증거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의 확인
- AE등록 실무종사자들이 등록갱신을 신청하면서, 적정 수준의 최근 CPD에 참여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의 확인.

라.2. 한국 심사등록위원회의 구성(15인)

- 위원장 :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검정이사
- 위 원 : 정부기관(노동부, 건설교통부, 교육부, 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의 서기관 급 이상)
민간기관(기술사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토목학회, 엔지니어링진흥협회)
위원장위촉(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개발원책임연구원, 충북대학 토목과 교수)

라.3. 사무국 및 전문위원회

- 사무국 :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검정계획부장 및 차장
- 전문위원회 : 노동부, 건교부, 과기부의 담당사무관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개발원, 기술사회 담당자

라.4. 심사등록사무소

- CIVIL 및 STRUCTURAL 분야 심사등록사무소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별도의 조직구성

마. 상호면제 기본 틀

마.1. 개요

- 서명국가들은 각 회원국의 실무종사권 통제 법정기관이 AE의 추가심사에 대한 전체/일부 면제를 부여하는 협정이 법정기관과 관련정부의 동의에 의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인정
- 관련국 면허등록요건으로부터의 면제가 아닌, 면허등록 관련법규상의 심사체계로부터의 면제(전체 혹은 일부)가 현안 문제라는 사실을 주목
- 면허등록당국이 법률상 지역사회의 건강, 안전, 복지를 보호하는 법적 책임을 가지고, 독립 실무종사권 신청자에 대하여 추가심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주목.
- 그 추가심사목적은 아래 사실에 대한 충분한 확신을 하는 것으로만 제한
즉, 관련된 실무종사권 신청자들이;
 - ▶ 적용 시방서 등의 근거가 되는 일반원칙을 이해하고,
 - ▶ 그러한 원칙에 대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적용능력을 소지하고,

- ▶ 해당국 법규상의 기타 특별한 요구조건을 숙지하고 있다.
- AE가 면허등록관련 법률상의 보증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다른 추가심사를 받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 최소한의 서류절차로 AE에게 보증제공기회가 부여되어야 함

마.2. 언어

- 공학업무 의사소통의 성격과, 기술자와 고객간의 관계, 그리고 회원국내에서 혹은 회원국간의 기술 및 전문사항의 정보교환을 위한 공용어로서 폭넓은 영어사용이 전제된다면, AE로 하여금 해당국 공식언어의 유창함을 측정 증명할 필요는 없음.

-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AE의 능력은 항상 고객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능력에 달려 있음.

마.3. 특수한 기술적, 법적 또는 실무종사의 문제

- 지원조직 내에서의 업무

AE가 지원조직 내에서만 업무에 종사하거나, 또는 독립업무를 위하여 기 면허 취득된 기술자와의 공식관계를 통하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큰 문제가 없을 것임

- 완전 독립업무

AE가 완전한 독립업무권을 취득하려면, 적용될 수 있는 심사형식은 아래의 것들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포함 할 수 있음.

- ▶ 업무설명서의 제출 ,
- ▶ 공식적인 시험 또는 면접,
- ▶ 적용기간(정해진 한도를 넘지 않는),
- ▶ 매우 경험이 많은 기술자를 위한 예외규정

마.4. 심사

- 일반적으로 법정당국이 지역사회 의 보건, 안전, 복지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 책임과 양립할 수 있는 심사에 대하여는 최소개입원칙을 선호함.
- 특수한 기술적, 법적, 또는 실무적인 문제와 관련된 심사는, 오직 그 관련된 형태의 실무에 종사할 것을 제안한 시점에서 시행되어야 함.
- AE에게 해당국 법률상의 적용기간 의무를 완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추가 공식심사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보다 좋음.
- 그러한 적용기간이 명시된다면, 보통 12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으로서 회원국 사이에서 협상되어야 함.
- 해당국 MC는 적용기간의 시행결과를 감시함.
- AE가 개인적으로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각 등록기관의 요건 및 법적 절차상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함.

마.5. 시행

- APEC 내의 많은 사업들은 자발적인 참여에 근거를 두고 있음.
- 관심 있는 회원국은 AE를 개발 설치하기 위하여 참여해 왔고, 지금은 상호면제 기본틀에 그것을 관련시키려고 함.
- 다른 회원국들도, 일단 AE 기본틀 및 규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준비되어 해당국 관련 당국의 신뢰를 받는 MC가 설립된다면, CC에서 권한을 갖고, 계속해서 AE 심사등록 사무소의 설립 및 유지를 위한 공인을 추구할 수 있음.
- 상호면제기본틀을 위하여 이와 유사한 접근방법이 채택되도록 권고함.

바. 등록기술 분야

- MC는 CC승인목록 중에서 심사되는 기술분야를 확정해야 함.
- CC는 다음의 분야들을 승인했음.
 - # 토목공학
 - # 구조공학
 - # 지반공학
 - # 환경공학
 - # 기계공학
 - # 전기공학
 - # 산업공학
 - # 광산공학
 - # 화학공학

사. A.E. 관련문건

사.1. APEC ENGINEER MANUAL

사.2. APEC ENGINEER ASSESSMENT STATEMENT

사.3. APEC Engineer Monitoring Committee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본문15조 및 부칙 2조)

사.4. Civil 및 Structural 분야 APEC 엔지니어의 심사등록 운영규정(본문19조 및 부칙 3조)

사.5. Civil 및 Structural 분야 APEC 엔지니어의 심사등록 운영규정 관련 세부심사내부지침

사.6. Civil 및 Structural 분야 APEC 엔지니어 계속교육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본문 16조 및 부칙 2조)

2.3. 기대효과 및 향후 활용목표

가. 기대효과

가.1. 건설시장 현황

- 국내 건설시장은 WTO에 의해 이미 전면 개방된 상태임
 - ▶ 건설시공 : 민간 '96.1, 공공 '97.1
 - ▶ 설계용역 : 민간 '93.5, 공공 '97.1
 - ▶ 책임감리 : '95.7
- 국내건설시장 개방에 따라 외국 건설기술자가 국내에 들어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학력·경력자제도』 도입·시행 중('95.10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
 - ▶ 위험부담이 적은 엔지니어링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진출·활약 중 : 총 859명 외국기술자 등록(2000년 2월 말 현재 : 감리 및 설계 447, 시공 128, 기타 284)
 - ▶ 국가별로는 APEC 회원국 기술자가 58% 차지
(미국 370, 캐나다 5, 일본 117, 중국12)
- APEC 지역은 세계 건설시장 총액의 약 34% 차지(520억불)

- ▶ 해외공사현황 (현재 총 70억불 수주액 중 31억불 차지, 총 1,250명 기술진 파견)
- ▶ 현재 APEC 지역에 69개 국내 건설업체가 참여, 활발히 활동 중

가.2. 기대효과

- 현재 국내에 진출한 외국건설기술자들은 대부분 특급기술자의 대우를 받고 있으며 임금 수준도 매우 높은데 비하여 그 실질적인 자격수준은 낮은 것으로 판명되는 바, APEC엔지니어 자격제도가 시행되면 APEC엔지니어 자격이 없는 외국기술자에 대한 선정 기준이 엄격하게 되어 국내 건설업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임
- 현재 해외에서 수행 중인 건설회사 및 용역회사의 경우 각종 도서의 서명권을 현지 기술사에게 의뢰하여야 함으로 불편하고 추가 비용이 소요되었으나, 국내 APEC엔지니어로 대체 가능함
- 기술자 개인으로는 해외에서 건설관련 활동을 할 때 현지 자격증을 취득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였으나, 이제는 국내에서 취득한 APEC엔지니어 자격증으로 모든 활동이 보장되므로 편리하여짐
- 해외 용역 및 공사의 발주 시 사전자격심사 요건에 APEC엔지니어의 참여를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음
 - ▶ 국가 간 기술자격 인정 시 수주활동이 활발한 동남아, 중국 등 신흥 해외건설시장 지역에 대한 국내 기술진의 적극적인 해외진출 촉진 가능

나. 활용목표

나.1. 개인적 차원

- 자기개발 촉진
- 활동영역 확대
- 기술자 권익옹호
- 안정된 직업확보

나.2. 회사차원

- 국제경쟁력 제고
- 기술력 향상

나.3. 국가차원

- 기술수출 확대
- 기반사회시설 건설비 절감
- 고용확대
- 관련산업 발전

3. 맺는 말

이상 APEC엔지니어 상호인정 사업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였다. 필자가 두 차례에 걸친 회의 참석 후 느낀 바로는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매우 조심스럽게 이 사업에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가 적극적이며 일본도 아시아를 대표하여야 된다는 자존심으로 인한 부담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듯 하지만 일본 내에서의 의견통합이 되어있지 않는 상황으로서 매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무도

APEC 엔지니어 사업의 결과에 대한 확실한 효과를 말할 수 있는 실정이 아니다.

APEC 엔지니어 조정위원회의장이고 호주의 기술사회장인 그레아씨가 인사말에서 APEC 엔지니어가 되면 과연 무슨 이익이 있는지 나도 단언할 수 없다. 앞으로 여러분이 협의하여 어떠한 이익이 있을지를 만들어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할 정도로 아직은 매우 유동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미국은 자국 내에서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는 이유를 대고 임시회원의 자격으로 참석하여 크게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금년 10월 홍콩에서 개최예정인 제3차 APEC엔지니어 조정위원회에는 이제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태도를 바꾸어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미국의 영향력은 임시회원 자격으로 참석할 때도 대단한 것이었는데 이제 정식회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은 미국 내에서 APEC엔지니어 상호인정사업이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이용가치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이익창출을 위해서 다른 회원국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틈바구니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권익을 창출해야 될 것인가?

실질적동등성에 대한 협의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 기준에서 합의가 되었으니 큰 문제가 없을 것이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상호면제협정은 각 회원국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상충될 수도 있는 사항으로서 자칫 실수하면, 우리 전문기술자들의 입지가 약화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첫째로 관련 정부기관 및 민간기구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모든 대외관계에서 비슷한 원칙이 적용되겠지만, 특히 APEC엔지니어제도는 외교통상부, 교육부, 노동부, 과기부, 건교부, 산자부 등이 모두 관련되며, 산업인력공단,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술사회 등도 관련되므로 서로 정보교환을 활발히 하고, 동일목표를 설정하여 각자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휘본부가 설립되어야 해외에 나가서 우리의 목표하는 바를 관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WTO, APEC관련 각종 회의가 빈번하고 다양한 협정이 맺어지고 있는데 이들이 모두 일관 된 원칙과 상호검증을 통해서 차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처해야될 것이다.

물론 현재 산업인력공단에 한국APEC엔지니어심사등록위원회가 있으나 그 기관의 역할은 한정되어있으므로 보다 더 강력한 기구가 바람직하다

둘째로 충분한 사전조사 및 자체협의를 거쳐야 된다. 일본과 말레이시아 등과의 쌍무협정을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고 잃는 것이 무엇이 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도록 상대국의 관련제도 및 시장현황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를 한 후 이를 기초로 우리 내부의 자체협의를 충분히 이루어진 후 협상에 응해야 될 것이다.

셋째로 본 제도가 국가법의 울타리 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국내법에 반영되어야 될 것이다.

현재 한국심사등록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위에서 열거한 6개 정부부처의 서기관들이 참여하고는 있으나 아직 APEC 엔지니어자격이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반영되어있지 않는 실정이므로 국제사회에서 상호협의를 된 사항들의 국내에서의 효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넷째로 APEC엔지니어의 기술경력관리체계를 새롭게 수립하여 세계시장에 훌륭한 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이제까지의 평면적인 경력관리가 아니고, 각 개인별로 진정한 전문능력이 무엇인지를 본인과 고객이 알 수 있도록 내용이 알찬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과 자금이 마련되어야 된다.

그 동안에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자체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해왔고 산업인력공단에서 매우 작은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여왔으나, 이제는 정부기관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때가 된 것이다.

이번에 APEC엔지니어가 되겠다고 신청한 1,000명의 엔지니어가 선구자가 되어 위에서 열거한 향후 활용방향과 정부, 관련기관 및 APEC엔지니어가 각각 담당해야할 역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충분하고 진지한 토론의 기회를 가진 후 의견이 모아지면, 합의된 안들이 시행되도록 강력하게 추진하여야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APEC엔지니어가 세계의 기술사 중 모든 면에서 으뜸으로 평가받아 한국의 기술번영을 이루는 주체가 되는 모습을 보는 것도 기대해 볼만하다.

참고문헌 : APEC 엔지니어 관련 문헌(본문 참조 바람)